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8. 2.
행정문화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7월 23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10년 7월 29일

3. 상 정 및 의 결 일 자

제29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10. 8. 2.)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운영현)

1. 제안이유

- 민선5기 출범에 따라 모두가 더불어 함께 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재편과 정원 감축을 위하여
-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정원의 총수 조정 : 2,937명 → 2,888명 (△49명)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447명 → 1,398명 (△49명)

※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는 변동 없음.

②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별표 3>

○ 총계	2,937	→	2,888	△49
- 일반직	1,086	→	1,042	△44
· 4급이상	72	→	67	△ 5
· 5급이하	1,014	→	975	△39
- 연구직	138	→	137	△1
· 연구관	22	→	21	△ 1
- 기능직	247	→	243	△4

※ 별정직, 지도직, 소방직, 교육공무원은 변경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장용대)

가.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출범에 따라 모두가 더불어 함께 하는 충북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재편과 정원감축을 위하여,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정원의 총수를 2,937명에서 2,888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447명에서 1,398명으로 49명을 감원하는 것임.

직급별 정원조정을 보면 일반직 4급이상이 72명에서 67명으로 5명 감원되고, 5급이하가 1,014명에서 975명으로 39명 감원되고, 연구직 연구관이 22명에서 21명으로 1명 감원되고, 기능직이 247명에서 243명으로 4명 감원되도록 조정되었음.

나. 총액인건비와의 관계

2010년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충청북도 총액인건비는 1,836억원이며, 2010년도 당초예산 1,733억원을 차감하면 금년도 운용가능 총액인건비는 103억원임. 그러나 이는 금년 3월 증원된 145명(본청 10명, 소방본부 135명)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임.

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른 49명의 정원감축으로 인해 매년 29억원의 총액인건비가 가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민선5기 출범에 따라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충북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재편과 정원 감축을 위하여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 요지 : “생략”

VI. 심사 결과 : 원안의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937”을 “2,88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47명”을 “1,39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출 장 소
총 계	2,888	-				
정 무 직 계	1	1				
도지사	1	1				
일 반 직 계	1,042	-				
2~3급	1		1			
3급	8	7		1		
3~4급	1	1				
4급	57	39	7	4	6	1
5급이하소계	975	-				
별 정 직 계	21	-				
1급 상당	1	1				
5급상당이하소계	20	-				
연 구 직 계	137	-				
연 구 관	21			19	2	
연 구 사	116	-				
지 도 직 계	24	-				
지 도 관	6			6		
지 도 사	18	-				
소 방 직 계	1,378	-				
소 방 정	10	2		8		
소방령이하	1,368	-				
교육공무원계	42	-				
총 장	1			1		
교수·부교수·조교 수·전임강사	30			30		
조 교	11	-				
기 능 직 계	243	-				

※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937</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447</u>명</p> <p>2. ~ 4.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888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398</u>명</p> <p>2. ~ 4.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⑤(생략)